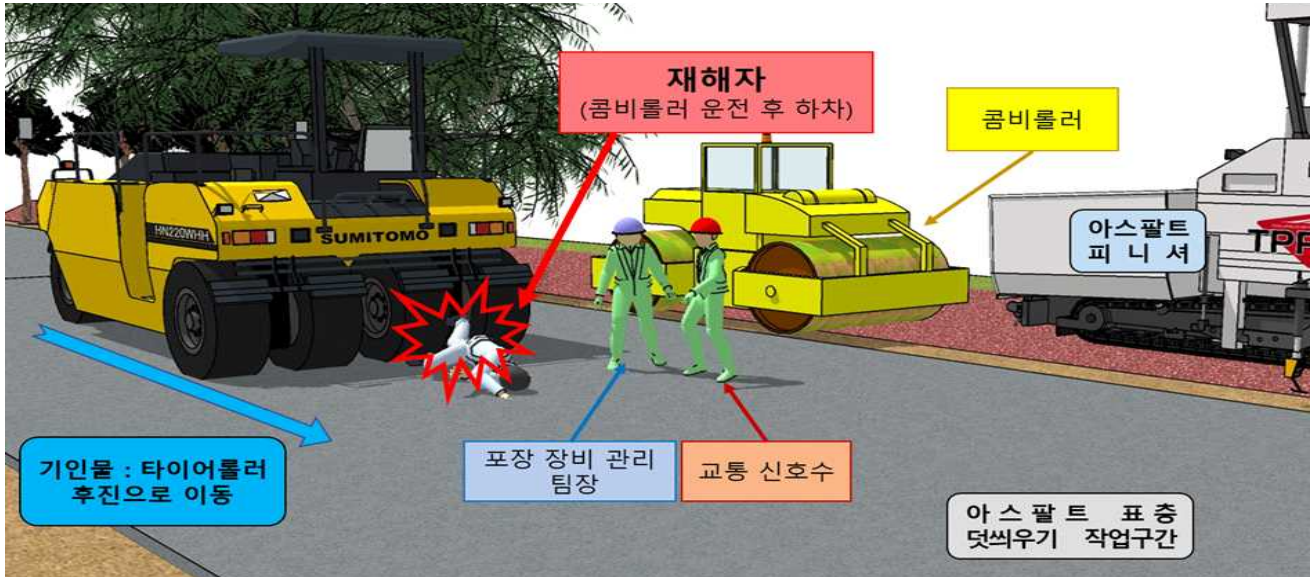




재해개요

- 2021. 9. 11.(토) 16:20경 전남 □□군 △△면 소재 ○○○공사 현장에서 ○○ 소속 피해자가 도로 포장 복구 작업 중 후진하는 포장장비(타이어롤러)에 부딪힌 후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접촉방지조치 미 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인 포장장비(타이어롤러)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다짐작업 시 작업구간 내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금지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, 도로에 차량통제 교통 신호수만 배치
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무자격자 운행**
 - 건설기계면허(롤러운전기능사)를 소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건설기계 운행



재해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접촉방지조치 철저**
 - 포장장비(타이어롤러)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접촉위험이 없도록 작업구간에 작업자 출입금지조치, 장비유도자 배치 등 접촉방지조치와 관리감독 철저
- 차량계 건설기계 유자격자 운전**
 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은 해당기계를 조정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 유자격자가 운행하도록 조치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(타이어롤러) 사용 작업에 대한 장비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포장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전달, 교육 하여야 함.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